일제시기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 취체규칙』에 관련된 기록들

- 근대와 전근대, 식민지 권력과 피식민지인의 물밑싸움 -

글 | 정일영(남서울대학교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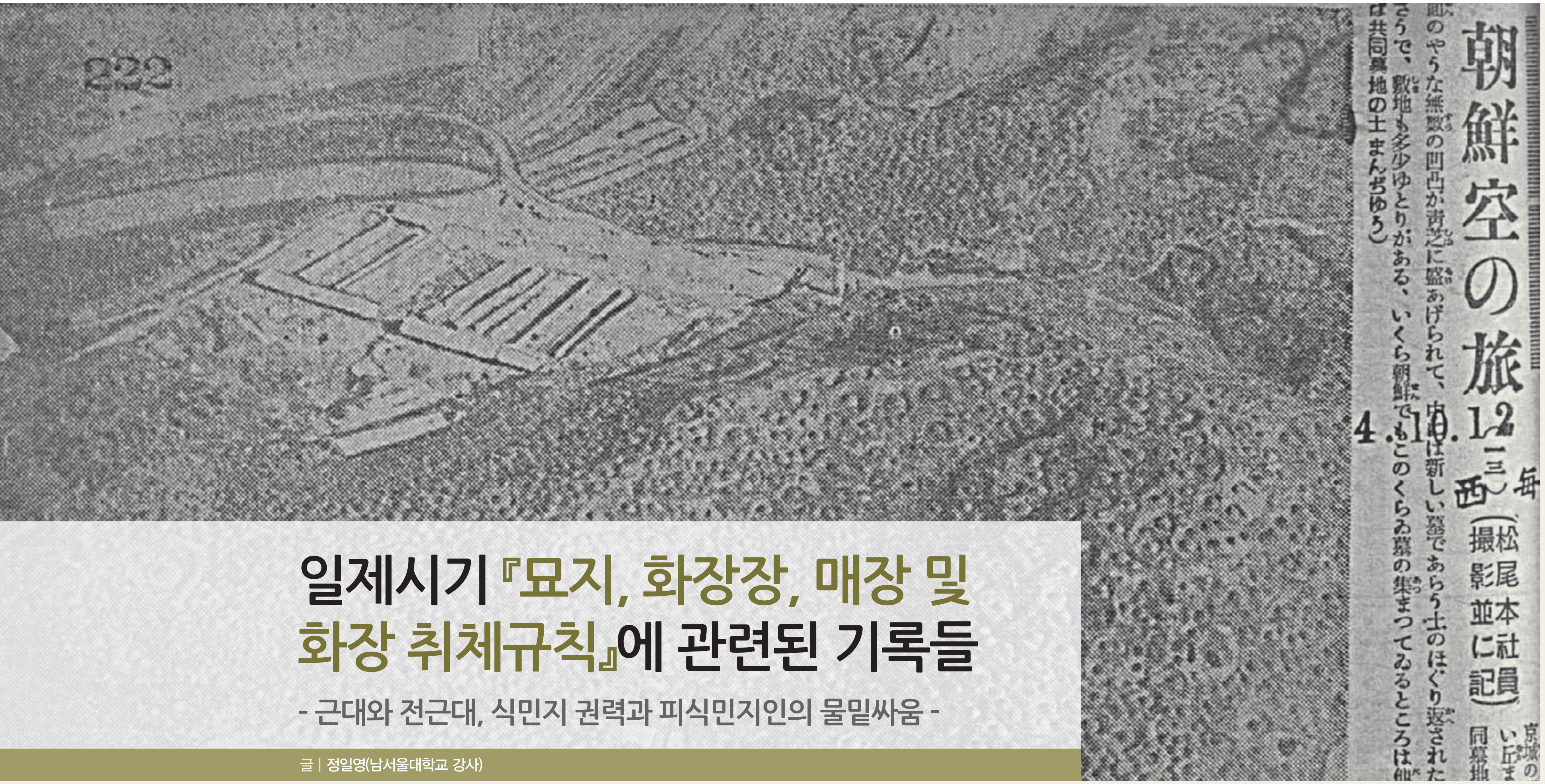

朝鮮空の旅 12 （三） 西 （松尾本社員撮影並に記）

毎

京城の

い丘ま

同墓地

面のやうな無數の凹凸が青芝に盛あげられて、中は新しい墓であらう土のほぐり返された

さうで、敷地も多少ゆとりがある、いくら朝鮮でもこのくらゐ墓の集まつてゐるところは他

は共同墓地の土まんぢゆう）

4.10.12

● 1929년 10월 12일 《오사카 매일신문》, 경성 외각 공동묘지를 찍은 항공사진

여기 한 장의 흑백 사진이 있다. 자세히 보지 않고는, 그리고 사진 옆의 설명을 읽지 않고서는 사진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 마치 곰보의 얼굴처럼 표면이 매끄럽지 못해서 얼핏 보면 달이나 화성의 표면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이 사진은 1929년 10월 12일자 《오사카 매일신문 부록 서부매일(大阪每日新聞 附錄 西部每日)》에 게재된 것으로, 경성 외각의 공동묘지를 찍은 항공사진이다. 이렇게 묘지가 산 전체를 뒤덮은 광경이 일본인들에게 익숙한 풍경은 아니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이 사진을 볼 때에도 기이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미 일제가 한국을 병탄한지 십 수 년이 지난 때라도 이 풍경이 기이하고 낯선 것이었다면, 병탄 직후에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일제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에 산재해 있는 묘지들은 단순히 신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관리'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을 법 하다. "전국토의 묘지화"와 같은 문구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계속되는 문제제기를 생각해보면 이런 시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도 아니다.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묘지 문제를 둘러싼 일제와 한국인의 대립은 근대와 전근대의 대립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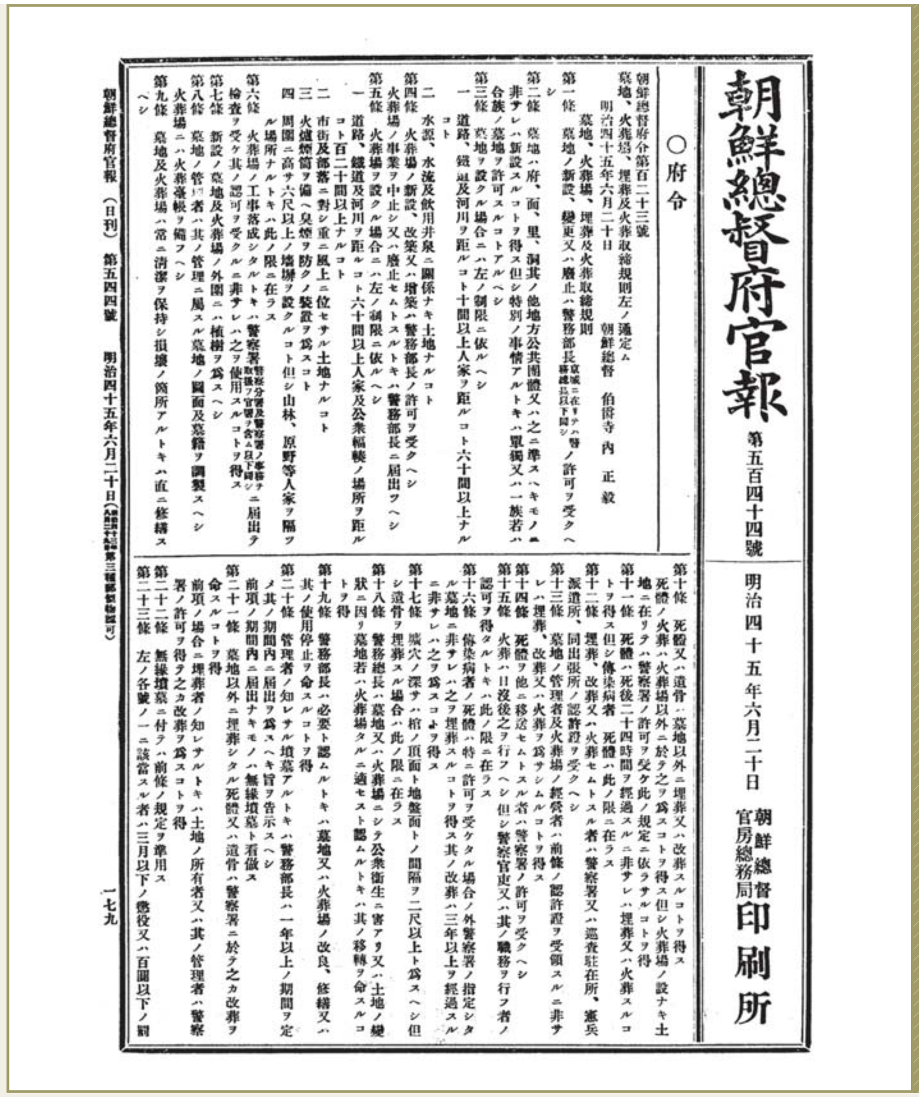

朝鮮總督府官報

第五百四十四號

明治四十五年六月二十日

朝鮮總督官房總務局印刷所

○府令

朝鮮總督府令第百二十三號

墓地、火葬場、埋葬及火葬取締規則左ノ通定ム

明治四十五年六月二十日　朝鮮總督　伯爵寺內正毅

墓地、火葬場、埋葬及火葬取締規則

第一條　墓地ノ新設、變更又ハ廢止ハ警務部長（京城ニ在リテハ警務總長以下同シ）ノ許可ヲ受クヘシ

第二條　墓地ハ府、面、里、洞其ノ他地方公共團體又ハ之ニ準スヘキモノニ非サレハ新設スルコトヲ得ス但シ特別ノ事情アルトキハ單獨又ハ一族若ハ合族ノ墓地ヲ許可スルコトアルヘシ

第三條　墓地ヲ設クル場合ニハ左ノ制限ニ依ルヘシ

一　道路、鐵道及河川ヲ距ルコト十間以上人家ヲ距ルコト六十間以上ナルコト

二　水源、水流及飮用井泉ニ關係ナキ土地ナルコト

第四條　火葬場ノ新設、改築又ハ增築ハ警務部長ノ許可ヲ受クヘシ

火葬場ノ事業ヲ中止シ又ハ廢止セムトスルトキハ警務部長ニ屆出ツヘシ

第五條　火葬場ヲ設クル場合ニハ左ノ制限ニ依ルヘシ

一　道路、鐵道及河川ヲ距ルコト六十間以上人家及公衆輻輳ノ場所ヲ距ルコト百二十間以上ナルコト

二　市街及部落ニ對シ風上ニ位セサル土地ナルコト

三　火爐煙筒ヲ備ヘ臭煙ヲ防クノ裝置ヲ爲スコト

四　周圍ニ高サ六尺以上ノ墻壁ヲ設クルコト但シ山林、原野等人家ヲ隔ツル場所ナルトキハ此ノ限ニ在ラス

第六條　火葬場ノ工事落成シタルトキハ警察署（警察分署及警察署ノ事務ヲ取扱フ官署ヲ含ム以下同シ）ニ屆出テ檢查ヲ受ケ其ノ認可ヲ受クルニ非サレハ之ヲ使用スルコトヲ得ス

第七條　新設ノ墓地及火葬場ノ外圍ニハ植樹ヲ爲スヘシ

第八條　墓地ノ管理者ハ其ノ管理ニ屬スル墓地ノ圖面及墓籍ヲ調製スヘシ

火葬場ニハ火葬臺帳ヲ備フヘシ

第九條　墓地及火葬場ハ常ニ淸潔ヲ保持シ損壞ノ箇所アルトキハ直ニ修繕スヘシ

第十條　死體又ハ遺骨ハ墓地以外ニ埋葬又ハ改葬スルコトヲ得ス

死體ノ火葬ハ火葬場以外ニ於テ之ヲ爲スコトヲ得ス但シ火葬場ノ設ナキ土地ニ在リテハ警察署ノ許可ヲ受ケ此ノ規定ニ依ラサルコトヲ得

第十一條　死體ハ死後二十四時間ヲ經過スルニ非サレハ埋葬又ハ火葬スルコトヲ得ス但シ傳染病者ノ死體ハ此ノ限ニ在ラス

第十二條　埋葬、改葬又ハ火葬セムトスル者ハ警察署又ハ巡查駐在所、憲兵派遣所、同出張所ノ認許證ヲ受クヘシ

第十三條　墓地ノ管理者及火葬場ノ經營者ハ前條ノ認許證ヲ受領スルニ非サレハ埋葬、改葬又ハ火葬ヲ爲サシムルコトヲ得ス

第十四條　死體ヲ他ニ移送セムトスル者ハ警察署ノ許可ヲ受クヘシ

第十五條　火葬ハ日沒後之ヲ行フヘシ但シ警察官吏又ハ其ノ職務ヲ行フ者ノ認可ヲ得タルトキハ此ノ限ニ在ラス

第十六條　傳染病者ノ死體ハ特ニ許可ヲ受ケタル場合ノ外警察署ノ指定シタル墓地ニ非サレハ之ヲ埋葬スルコトヲ得ス其ノ改葬ハ三年以上ヲ經過スルニ非サレハ之ヲ爲スコトヲ得ス

第十七條　壙穴ノ深サハ棺ノ頂面ト地盤面トノ間隔ヲ二尺以上ト爲スヘシ但シ遺骨ヲ埋葬スル場合ハ此ノ限ニ在ラス

第十八條　警務總長ハ墓地又ハ火葬場ニシテ公衆衛生ニ害アリ又ハ土地ノ狀況ニ因リ墓地若ハ火葬場タルニ適セスト認ムルトキハ其ノ移轉ヲ命スルコトヲ得

第十九條　警務部長ハ必要ト認ムルトキハ墓地又ハ火葬場ノ改良、修繕又ハ其ノ使用停止ヲ命スルコトヲ得

第二十條　管理者ノ知レサル墳墓アルトキハ警務部長ハ一年以上ノ期間ヲ定メ其ノ期間內ニ屆出ヲ爲スヘキ旨ヲ告示スヘシ

前項ノ期間內ニ屆出ナキモノハ無緣墳墓ト看做ス

第二十一條　墓地以外ニ埋葬シタル死體又ハ遺骨ハ警察署ニ於テ之カ改葬ヲ命スルコトヲ得

前項ノ場合ニ埋葬者ノ知レサルトキハ土地ノ所有者又ハ其ノ管理者ハ警察署ノ許可ヲ得テ之カ改葬ヲ爲スコトヲ得

第二十二條　無緣墳墓ニ付テハ前條ノ規定ヲ準用ス

第二十三條　左ノ各號ノ一ニ該當スル者ハ三月以下ノ懲役又ハ百圓以下ノ罰

朝鮮總督府官報（日刊）　第五四四號　明治四十五年六月二十日（[illegible]第三種郵便物認可）　一七九

● 1912년 6월 20일 〈조선총독부관보〉 제544호의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 취체규칙〉

조선총독부는 1912년 6월 20일 부령 제123호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 취체규칙(墓地火葬場埋葬及火葬取締規則)〉(이하 〈취체규칙〉)을 발포했다. 이 〈취체규칙〉은 총 24개의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묘지 및 화장장을 설치하거나 이전, 폐지를 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방공공단체' 혹은 그에 준하는 단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설하지 못하게 했다. 묘지와 화장장을 신설할 경우 따라야 하는 제한 사항도 명시하였는데, 묘지와 화장장을 위생 등의 이유로 다른 공중시설과 거리를 두게 한 조항과 묘지 근처에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조항, 묘지의 청결과 보수를 의무로 하는 조항이 그것이다. 특히 제16조는 전염병자의 시체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는데, 특별히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경찰서에서 지정한 묘지가 아니면 매장할 수 없으며, 전염병자 사체의 개장(改

葬)은 3년 이상 경과하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또 매장할 때에 사용할 구덩이의 깊이나 화장을 실시할 때의 시간대도 지정했으며, 주인이 없는 무덤을 처리하는 방식도 규정하였다. 그 밖에 제23조와 제24조는 〈취체규칙〉의 위반시 처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처벌의 내용은 사안에 따라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나 과료였다.

오늘의 관점으로 본다면, 병탄 직후 식민지 운영을 위한 새로운 제도나 기구를 만드는데 한창이었을 1912년에 묘지나 화장에 관련된 규칙을 제정했다는 사실 자체가 의외일 수 있다. 대체 묘지가 식민지 조선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기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일제는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서둘러 이 〈취체규칙〉을 제정했던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취체규칙〉 발포 직후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였던 《매일신보》에 게재된 논설을 살펴보면 당시 일제의 문제의식을 표면적이나마 파악할 수 있다. 1912년 6월 23일자 《매일신보》에 「묘지 및 화장장(墓地及火葬場)」이라는 논설이 게재되는데, 이 논설에서는 〈취체규칙〉의 시행으로 “조선 분묘의 폐단”이 일소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길지(吉地)를 찾으려 열을 올리는 습속으로 인하여 소송의 “열에 다섯, 여섯”이 모두 분묘에 관련하여 발생하고, 사람이 죽었을 경우 시체를 방치하거나 어린 여자아이가 죽었을 때 원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다 시체를 묻는 경우가 있어 여러모로 폐단이 많다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이틀 후인 1912년 6월 25일자 《매일신보》에는 실명이 거론되지는 않았으나 조선총독부 “당국자”의 담화문이 게재되었다. 이 담화문을 살펴보면 한국인들이 묘지 관련 미신을 매우 깊게 믿고 있으며 이로 인해 “풍속상 · 경제상 · 공중위생상” 폐해가 많다는 문제의식을 일제가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제의 이러한 문제의식, 그리고 서둘러 발포한 〈취체규칙〉에도 불구하고, 이 규제가 곧바로 전국에 시행되지는 못했다. 일제는 이미 한국인들이 묘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묘지를 함부로 개장하거나 폐지할 경우 민심의 동요가 매우 클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매일신보》의 담화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때문에 일제는 최초 〈취체규칙〉을 발포했던 때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1913년 9월에서야 경성에 한해 〈취체규칙〉을 시행하였다. 이후 1915년 3월 1일 충청남도에서 〈취체규칙〉이 시행되는 것을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데에 거의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사실 이 〈취체규칙〉이 그렇게 복잡한 법규는 아니었으나, 당시 한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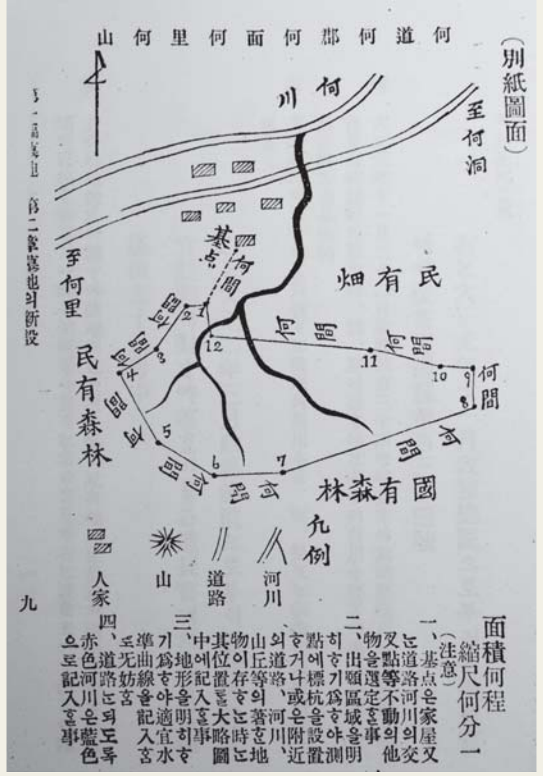

●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 취체규칙 논해』에 수록된 공동묘지 신청서 양식 중 지형도(서강대학교 도서관 소장)

들에게는 낯설고도 또 한편으로는 많은 의심이 가는 규정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기존 묘지의 신고 및 등록이 이루어져야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한국인들의 자진 신고 실적은 매우 저조한 편이었다. 때문에 일제는 이 〈취체규칙〉의 시행 의의에 대해 언론기관 등을 동원하여 홍보 및 설명을 하려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간행된 책이 있었으니, 바로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 취체규칙 논해(墓地火葬場埋葬及火葬取締規則論解)』(이하 『논해』)가 그 책이다.

이 『논해』는 1913년 간행되었고 저자는 정우범(鄭雨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인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알 수 없다(조선총독부 직원록 상에 1928년부터 1933년까지 동명의 인물이 현덕면장(玄德面長)을 지냈다는 기록이 발견되지만 이 인물이 이 책의 저자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개인이 출판한 출판물로 보일 수 있으나 이 책은 경무총감부의 허가를 받고 간행된 책이었다. 또한 〈취체규칙〉에 대한 설명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910년대의 사정을 감안하면 일제의 검열 및 검토를 거쳤을 것이 분명하다. 분량은 본문만 72페이지로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취체규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고 있다. 이런 책까지 간행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당시 간행되던 천주교 잡지인 《경향잡지》의 264호, 265호의 「법률문답」에서도 볼 수 있듯이 〈취체규칙〉은 한국인들에게 관심의 대상이었다. 또한 묘지와는 반대로 화장은 한국인들에게 관심이 대상이 아니었음도 확인할 수 있다. 23개에 이르는 질문 중 화장에 관련된 것은 단 1건에 불과하고, 그조차 자기 소유의 산림이나 토지 혹은 집과 가까운 곳에서 화장장을 만들 때 금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논해』가 〈취체규칙〉의 설명서임에도 그 구성이 〈취체규칙〉과는 다른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은 한번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즉, 〈취체규칙〉 조항의 순서대로 설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용어 설명부터 시작하여 주제별로 재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취체규칙〉에 사용된 용어가 그 규칙을 지켜야할 한국인들에게 낯선 것이었으며, 또 그 구성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되어 있지 않음을 반증한다. 예를 들어 ‘공동묘지’의 경우 1910년 이전에도 가끔 사용되던 단어이기는 했지만,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묘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존재했던 마을묘지, 즉 북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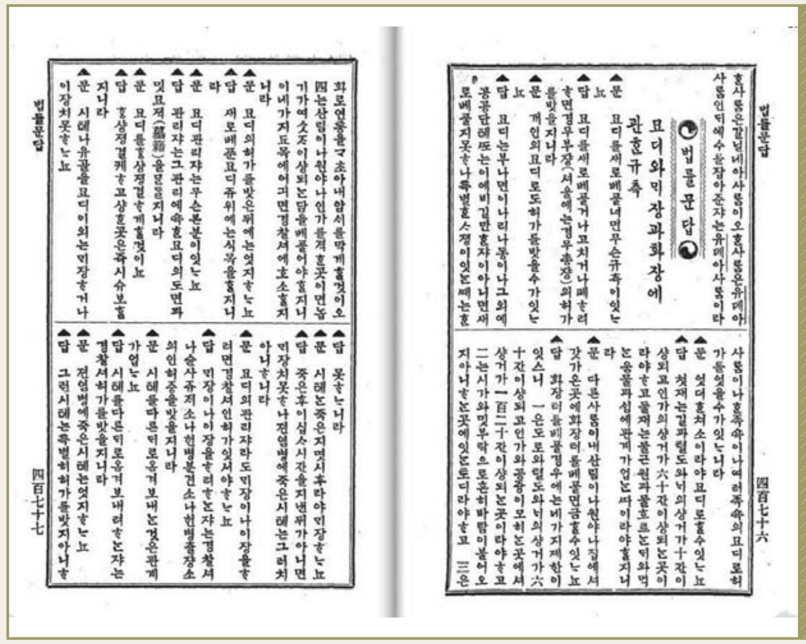

● 1912년 10월 31일 《경향잡지》 264호에 수록된 법률문답, “묘지와 매장과 화장에 대한 규칙”

(산)을 의미하는 것에 가까웠다. 하지만 〈취체규칙〉에서 일제가 의미하는 공동묘지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니었다. 이에 대한 설명 없이 ‘공동묘지’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경우, 수많은 한국인들이 오해할 여지가 많았다. 가장 기본이 되는 단어인 ‘묘지’와 ‘분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현재에도 혼용되는 용어인 ‘묘지’ · ‘총묘’ · ‘분묘’는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다른 용어들도 따로 설명이 필요한 용어임을 『논해』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게다가 일부 조항에 단서로 붙어있는 ‘특별한 사정’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고 애매한 상태로 남아있었다. 이런 요소들은 뒤에 연속적으로 발표된 〈시행세칙〉이나 〈취급수속〉에도 설명이 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논해』에는 정무총감이 각 도 장관과 주고받은 문답도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은 주로 ‘단독묘지’, ‘일족묘지’, ‘일가묘지’, ‘합장’ 등이 의미하는 정확한 뜻을 묻는 것이었다. 이는 당시 규칙을 시행해야할 조선총독부의 관리들조차 용어에 대해 완벽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이해를 위한 용어의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또한 그것을 일반 실무자나 한국인 대중에게 알리는 것에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제는 체계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보다는 제도 시행에 따르는 비용 발생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으며, 이런 경제적

부담에 대해 조선총독부가 책임을 회피했다는 것을 〈조선총독부관보〉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일제는 이렇게 한국인에게 낯선 제도를 철저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했다. 그로 인해 업무상의 차질이 많았고 일제가 의도했던 묘지의 정리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인들은 〈취체규칙〉에 대한 불만만을 키워갔다. 묘지를 구분하기 위해 묘비나 묘표(墓標) 등을 설치하라는 일제의 장려에 대해서도 한국인들은 의심을 품고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이렇게 일제가 묘지를 등록시키고 묘표까지 세우게 하는 것은 묘지에도 세금을 부과하거나 묘표 등을 통해 돈을 벌어들이기 위함이라고 의심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취체규칙〉 자체에 대한 불만도 계속 늘어났다. 〈취체규칙〉에 의하면 선산(先山)에 묘를 쓴다던지 가족묘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조상을 모시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한국인들의 불만은 쌓일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공동묘지에 묘를 쓴다는 것은 제대로 고르지 않은 장소에 타인의 묘와 섞인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잘못된 묏자리가 후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한국인들에게 공동묘지는 묘를 쓰기에 좋은 장소가 될 수 없었다. 일제는 〈취체규칙〉 시행 후에 각 도시에서 '모범묘지'를 선정하여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공동묘지는 여전히 정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민심이 동요하고 새로 만들어진 공동묘지도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자, 일제는 1918년 2월 1일부로 〈취체규칙〉을 개정하게 되었다. 바뀐 내용은 제2조인데 공공단체에 준하는 자가 아니면 묘지의 설치를 금지한다는 기존의 조항에 단서를 추가한 것이었다. 그 단서의 내용은 "단, 일족 또는 합족의 분묘를 집장하기 위하여 현존하는 분묘경역에 혹은 이에 접하여 묘지를 만들고자 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제한이 없다"는 것이었다. 기존에 인정받은 선산의 묘가 있다면 그곳에 다른 일족의 묘를 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견 가족묘에 대해 허용을 해준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새로 만드는 것은 여전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크게 바뀐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게다가 기존에 '선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재력이 있는 극히 일부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봐야 한다. 어차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이전에도 예외를 인정했고, 당시 신문 등을 통해 보면 그 '특별한 사정'이 일부 고위층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으므로 대다수의 한국인들에게는 그다지 상관이 없는 개정이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다시 말해, 내용상 큰 개정이 있는 것은 아니었던 셈이다.

그런데도 일제는 이 개정을 크게 홍보하여 한국인들에게 자신들의 '선정(善政)'을 알리고자 했다. 이 개정 사항에 대해 당시 《매일신보》에서는 "묘지규칙의 일부 개정은 우리 조선인이 당국에 대하여 극히 감사해야할 일"이라고 극찬하기도 했으며, 사설묘지 허가의 범위가 확장된 것에 "대동(大同)의 탄희(歎喜)"라는 표현까지 쓰기도 했다. 또 당시 경무총감부 위생과장이었던 반도(板東) 경시(警視)는 담화문을 통하여 "본 개정의 이유는 주로 조선인의 선조 숭배의 염려를 존중한 바"라고 설명했다.

이런 '홍보활동'이 언론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1918년에 임인호(任寅鎬)가 저작하고 발행한『일선문대조 사설묘지규칙 설명서(日鮮文對照 私設墓地規則 說明書)』(이하『설명서』)에도 당시의 이런 분위기가 잘 반영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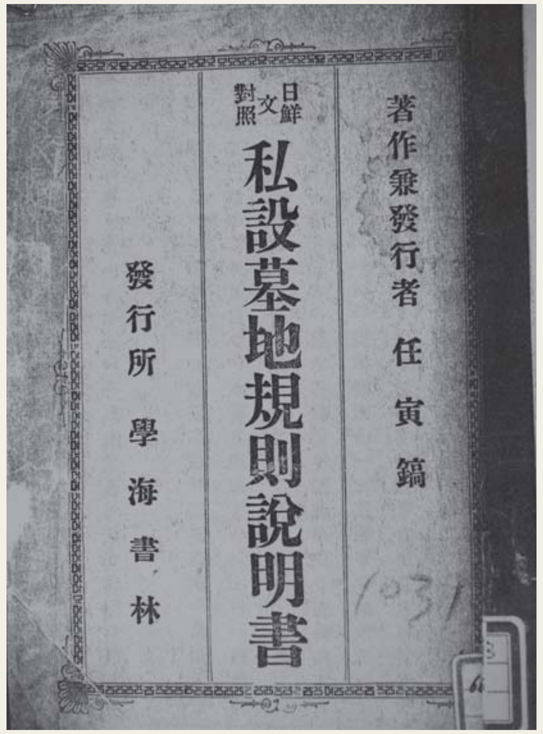

著作兼發行者 任寅鎬

日鮮文對照

私設墓地規則說明書

發行所 學海書林

1031

● 1920년 간행된『일선문대조 사설묘지규칙 설명서』
(국립도서관 소장)

이『설명서』또한 1912년 간행되었던『논해』와 같은 형식의 책으로 〈취체규칙〉 제2조의 개정에 따라 〈취체규칙〉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본문의 분량은 111쪽으로『논해』보다 분량이 많기는 하지만 그 내용과 형식은『논해』와 거의 일치한다. 저자가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논해』를 참고하여 만들어진 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가된 몇 부분이 이 책의 성격과 간행되던 당시의 분위기를 짐작하는데 도움을 준다.『논해』와 비교할 때 추가된 부분은 〈취체규칙〉의 시행세칙과 반도 경시의 담화문, 그리고 이 개정에 대해 칭송하는 글인 "일반(一般)이 하세가와(長谷川) 총독 시정에 감동", "사설묘지의 허가 범위가 대확장됨은 우리(我) 반도의 광영"이다. 이 글들은 제목대로 〈취체규칙〉의 개정이 대단한 선정이며 이에 대해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극찬은 이전의 취체규칙에 대해 한국인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했으며, 극찬 그 자체도 일제의 일방적인 입장이거나 자화자찬일 뿐 한국인들이 그렇게 느꼈다고 보기엔 어렵다. 취체규칙 개정에 대해 참사관 오츠카 츠네사부로(大塚常三郎)가 《조선휘보》에 쓴 글에도 나타나듯이, 기존의 취체규칙은 "그 운용 방법이 충분히 철저하지 못하여 지체에 고통을 하소연하는 자가 증가한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 오히려 일제의 과도한 자찬은 일반 한국인들로 하여금 사설묘지에 대한 규제가 모두 해제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일제는 그런 '오해'를 하지 말라는 홍보를 다시 해야만 했다. 《매일신보》가 개정 이후 1918년 3월 8일까지 총 10차례 묘지 문제에 대한 문답 기사를 게재했던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후에도 〈취체규칙〉은 1940년에 이르기까지 개정을 반복했다. 일제는 문명과 근대의 이름으로 한국의 묘제 및 그 문화를 바꿔보고자 했다. 그러나 1919년 3.1운동의 이유 중 하나로 〈취체규칙〉이 꼽힐 정도로 〈취체규칙〉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감은 대단했다. 마찬가지로 일제는 묘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계속 가진 상태에서 그 반감을 충분히 체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취체규칙〉의 개정을 반복했던 것이다. 1940년 《동아일보》의 기사를 보면 〈취체규칙〉의 개정 의의를 설명하며 전국토의 0.3%에 이르는 묘지 면적이 "경이적 숫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재미있는 점은 이미 충분히 근대화가 되고 문명화가 진행된 2011년 한국의 묘지 면적은 전국토의 0.28%라는 점이다(국토해양부의『2012년 지적통계연보』참조).

전국토 면적의 0.3%라는 숫자가 경이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일제에게 이 0.3%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묘지를 지키려했던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 이 0.3%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숫자였을 것이다. 그들 개개인에게 이 숫자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지키는 최소한의 숫자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당시에도 경제발전이 중요하다는 논리에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마을의 북망산이나 영산에, 또는 자신의 조상을 모신 묘지 부근에 개발 사업이 시작된다고 해서, 바로 자신에게 경제적 이익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었다. 그리하여 근대가 대대적인 승리를 거둔 시대라고 여겨지는 20세기 초부터 반세기 동안, 근대와 비(非)근대 혹은 전근대는 식민지의 공간에서도 여전히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식민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그 사투는 때로 식민지 권력과 피식민자의 민족적 대립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 사투와 대립은 전면적으로 벌어지는 전쟁이 아니라 잘 표시나지 않는 '물밑싸움'에 불과했지만, 그 싸움은 일제강점기 내내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 필자소개

서강대학교 사학과에서 한국사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부천대에서 강의를 했으며 현재는 남서울대학교 교양학부에서 시간강사로 근무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조선 후기 성별에 따른 자살의 해석 – 正祖代 〈審理錄〉의 자살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임진왜란 이후 '敎化'의 양상 – 광해군대『東國新續三綱行實圖』를 중심으로」 등이 있으며, '죽음'이라는 키워드를 역사적으로 조명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일제하 장묘제도 및 문화의 변천'에 대한 박사논문을 준비 중이다.